

# 조선 후기 科試 연구와 『承政院日記』의 활용\*

金光年\*\*

## 目 次

1. 머리말
2. 『承政院日記』 소재 科試 자료의 자료적 가치
3. 『承政院日記』 소재 科試 자료의 가공 및 활용 방안
4. 맺음말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科試 자료의 外延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과시 자료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承政院日記』 소재 과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것이다.

『승정원일기』에는 기존의 다른 과시 관련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기록들이 산재해 있다. 儒生 應製의 경우 시험 시행 사실과 더불어 합격자 명단과 시상 내역이 거의 누락 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課製의 경우에도 해당 과제의 배경과 더불어 관련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肅宗代의 경우 讀書堂 課製 관련 기록이 상세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親臨試의 경우에도 임금의 행적을 중심으로 시험 절차가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소재 과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자료의 集積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이에 대한 색인어 추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NRF-R1923541), 2020년 동방한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등의 적절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타의 과시 관련 자료와의 상호 참조를 통해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승정원일기』 소재 과시 자료를 과시 연구에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원활한 과시 연구를 위해서는 『승정원일기』를 필두로 다양한 編年體 역사 기록 소재 과시 자료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자료의 집적 및 분류 작업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핵심어** 『承政院日記』, 科擧, 儒生 應製, 課製, 親臨試.

## 1. 머리말

어느 분야나 그러하겠지만, 특히 고전 인문학 분야의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된다. 풍부한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연구 결과는 언제나 뒤집힐 수 있는 沙上樓閣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는 科試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 및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과시 연구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부분들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과시 자료의 체계적인 조사 및 집적 작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과시 연구에서는 주로 과거 답안을 모은 科文集과 참고서 및 개인 문집에 수록된 과문 및 과거 관련 논의들, 각종 榜目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해 왔는데, 방대한 과시 자료를 개별 연구자들이 일일이 검토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고 필연적으로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과시 자료의 外延을 확장<sup>1)</sup>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과시 자료들 중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承政院日記』 소재 과시 관련 자료들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승정원일기』는 조선 시대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의 일지로, 국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방대한 역사 자료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과시와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산재되어 있다. 비록 전란으로 인해 仁祖代 이후의 자료만이 남아 있다는 결점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정원일기』에 실린 과시 관련 자료들은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과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전면적인 검토와 자료 수집, 분류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한 기초적 고찰로서, 『승정원일기』에 산재되어 있는 과시 관련 자료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가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승정원일기』가 과시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 2. 『承政院日記』 소재 과시 자료의 자료적 가치

현전 『승정원일기』는 仁祖 원년(1623 癸亥)부터 純宗 隆熙 4년(1910 庚戌)까지 288년 동안의 왕명 출납 및 관련 업무 내용이 3,243책, 총 2억 4천 3백만여 자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다. 개별 역사 기록으로서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방대한 기록에는 국왕의 국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사회, 문화,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그중에는 다른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것들이

1)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박현순(2017), 심경호(2020) 등, 참조.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특히 科試 관련 자료들에 주목하여,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과시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1) 비정규 과시의 충실한 기록

『승정원일기』에는 다른 기록에서 찾기 힘든 비정규 시험, 이를테면 儒生 應製, 文臣 庭試 및 應製, 廣製 등 다양한 시험의 관련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다. 정규 과시가 아닌 이런 시험들은 榜目を 제작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 시험 답안을 모은 科文選集 등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험 시행 사실 자체마저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이러한 기록들은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생 응제의 경우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다. 시험 시행 사실은 물론이고, 시험 시행 전의 행정적 절차, 제목(문제)을 결정하는 과정, 奉入된 試券의 수량, 科次의 절차 및 결과 등 해당 시험에 대한 거의 모든 사실들이 일자를 분명히 밝혀 빠짐 없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한두 가지 기록이 누락될 수는 있어도 시험 시행 사실 자체가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당 시험이 親臨試인 경우에는 기록이 더욱 자세한 것은 물론이다.<sup>2)</sup> 일례로 高宗 1년(1864 甲子)부터 10년(1873 癸酉)까지의 내용 중에서 節日製 관련 기록을 추출하여 이 시기 절일제 시행 현황과 응시 인원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표 1> 고종 1년~고종 10년의 절일제 시행 현황 및 응시 인원

왕대	월	일	시험종류	제출 시권 수	비고
고종 1	7	26	七夕製	6,377	
	8	30	九日製	1,853	
고종 2	1	12	人日製	837	
	7	6	七夕製	612	
고종 3	9	13	九日製	483	
	11	28	七夕製	479	
고종 4	3	6	三日製	517	
	9	19	九日製	10,795	
고종 5	3	6	人日製	675	
	3	12	三日製	9,573	
고종 6	1	10	人日製	657	
	7	7	七夕製	673	
고종 7	1	7	人日製	397	
	7	7	七夕製	513	
	8	26	九日製	445	
고종 8	1	4	人日製	415	
	7	22	七夕製	미상	
	8	5	九日製	283	
고종 9	4	10	三日製	22,175	
고종 10	1	6	人日製	330	
	2	23	三日製	583	
	7	2	七夕製	420	

위 도표는 『승정원일기』의 절일제 기록 중에서 試券 奉入 보고 기사를 뽑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나열된 시험들은 모두 관리를 보내어 시험을 주관하게 한 것들이며, 이 목록에서 제외된 시험의 경우는 대개 고종의 親臨으로 치러졌다. 이중 가장 응시자가 많았던 고종 9년(1872 壬申)의 三日製를 예로 들어 보면, 제출된 시권은 총 22,175장이었고 당일예 科次가 이루어져 모두 100명을 선발하였다.<sup>3)</sup> 합격률은 4.5%로 상당히 낮

3) 『승정원일기』 「고종 9년(1872 壬申) 4월 10일」. “韓敬源啓曰：‘臣敬奉御題，與大

은 편이다. 해당 시험의 과차 장면을 보면 시관들이 먼저 시권을 考試한 뒤 이를 임금 앞에 가져가 과차하였다. 과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 한두 장만을 임금 앞에서 직접 읽은 뒤 임금이 임의대로 등급을 정하였다.<sup>4)</sup>

주지하다시피 절일제는 人日製, 三日製, 七夕製, 九日製의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고종 1년의 경우 위 도표에는 칠석제와 구일제 때에만 시권 봉입 기사가 있으나 시험 자체는 모두 시행되어 4월 22일에 인일제, 5월 13일에 삼일제가 각각 치러졌음이 역시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비정규 과시, 특히 유생 응제의 경우 『승정원일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인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시험 시행 사실은 거의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생 응제 등의 비정규 과시는 별도의 방목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시행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바, 『승정원일기』 기록은 그러한 자료의 빈틈을

---

提學趙性教, 偕往泮宮, 三日製儒生試取, 則收券爲二萬二千一百五十七張矣, 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4) 상계서. “壬申四月初十日戌時, 上御慈慶殿. 科次入侍時, 行都承旨韓敬源, 左副承旨趙定熙, 同副承旨李教復, 假注書曹寅承, 記事官趙鍾翼·李根命, 大提學趙性教, 行護軍南廷益, 兵曹參知李敦夏, 對讀官檢校直閣洪殷謨, 副校理朴顯陽, 修撰李秀萬, 以次進伏訖. 上曰: ‘史官分左右, 仍命科次. 性教奏曰: ‘讀券何以爲之乎?’ 上曰: ‘讀之.’ 秀萬讀第一張第三句, 上命止之. 性教曰: ‘書等何以爲之乎?’ 上曰: ‘自第一張至第二十張竝書正三下, 自第二十一張至第五十張, 竝書草三下, 自第五十一張至第一百張, 竝書次上.’ 性教書等訖, 敬源曰: ‘拆封何以爲之乎?’ 上曰: ‘承旨拆封, 可也.’ 敬源拆封, 讀奏之際, 性教起伏奏曰: ‘第四十三張封內, 漏臣字, 大違格例, 拔去何如乎?’ 上曰: ‘唯.’ 因爲下詢曰: ‘所居何鄉?’ 性教對曰: ‘端川人也.’ 上曰: ‘遐土之人, 昧例致此, 容或無怪, 添書臣字, 付之榜末, 可也.’ 性教對曰: ‘聖德至及於此, 竊不勝欽祝之至.’ 性教曰: ‘預次書外字乎?’ 上可之. 性教書外字訖, 上命書傳教曰: ‘三日製賦居首三下進士李建容, 之次三下進士趙鏞, 竝直赴殿試, 之次三下幼學趙斗永等十八人, 竝直赴會試, 之次草三下幼學姜渭鶴等三十人, 竝付之監試初試榜末, 之次上幼學尹元求等二十人, 各史記英選一件賜給, 之次上幼學韓期東等三十人, 各陸奏約選一件賜給.’ 又命書傳教曰: ‘入格儒生, 明日待令.’ 上曰: ‘史官就座.’ 仍命試官先退, 又命退, 諸臣以次退出.”

매워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에서는 유생 응제 시행 후 반드시 科次 사실에 대해 제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서술하는 기사가 별도의 조목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격으로 해당 시험에서 합격하고 어떤 특전을 받았는지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조 23년(1645 乙酉) 1월 8일의 人日製에 대한 인조의 備忘記를 보면, 아래와 같이 합격자 명단과 시상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備忘記에, “人일에 유생을 제술로 시험보일 때 居首한 幼學 崔繼亨은 直赴會試하고, 之次인 進士 李有源, 유학 安後昌, 전 監役 睦來善에게는 각각 2분을 주라. 유학 宋相琦·閔昀·洪錫龜·丁熙道에게는 각각 종이 10권, 붓, 먹 각각 5개씩을 주라.” 하였다.<sup>5)</sup>

이를 통해 해당 시험의 총 합격자 수는 8명이며, 각각에게 어떤 혜택이 부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명시하고 시상 내역을 제시하는 것은 『승정원일기』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과거 관련 기록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된다.<sup>6)</sup> 이러한 자료들을 한데 모아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검토해 본다면 우리는 유생 응제의 시대별 특성 내지는 경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당대의 시대상과 맞물려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科試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5) 『승정원일기』 『인조 23년(1645 乙酉) 1월 8일』, “備忘記, 人日製述儒生, 居首幼學 崔繼亨, 直赴會試. 之次進士李有源, 幼學安後昌, 前監役睦來善, 各給二分. 幼學 宋相琦·閔昀·洪錫龜·丁熙道, 各紙十卷, 筆·墨各五柄賜給.”

6)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록의 형식 자체는 모든 기사가 동일하여 암묵적인 규정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 (2) 文臣 課製의 충실한 기록

『승정원일기』에는 또한 다양한 課製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이 실려 있어서 과시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과제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과시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례로 肅宗代 讀書堂 課製 관련 기록을 살펴 보자. 독서당은 주로 조선 전, 중기에 활발히 운영되고 조선 후기에는 상대적으로 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7)</sup> 『승정원일기』의 관련 기록을 일별해 보면 특히 숙종의 독서당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단순하게 ‘湖堂’이 원문에 등장하는 사례만 보아도 숙종대가 총 36회로 영조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빈도로 독서당이 언급되고 있다.

숙종은 특히 독서당 인원의 제술 시험을 직접 챙기고 있다. 독서당 인원에 제술을 명령한 것이 여러 차례일 뿐더러, 임금이 직접 제술을 지시한 것도 『승정원일기』에서는 숙종대에 처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술 시험에서의 성적과 우수자 명단 또한 숙종대에 처음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숙종 8년(1682 壬戌) 6월의 제술 시험 관련 기록은 아래와 같다.

安垺에게 전교하기를, “湖堂 人員으로 하여금 제술하여 바치게 하라.” 하였다.<sup>8)</sup>

備忘記로 안후에게 전교하기를, “湖堂 製述에서 居首한 應教 趙持謙에게 豹皮 1疋을, 三中을 받은 校理 吳道一에게 虎皮 1령을, 三下를 받은 副校理 朴泰輔에게 鹿皮 1령을 賜給하라.” 하였다.<sup>9)</sup>

7) 조선시대 독서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김상기(1955) 참조.

8) 『승정원일기』 『숙종 8년(1682 壬戌) 6월 20일』. “傳于安垺曰: ‘令湖堂人員製進.’”

9) 상계서. “以備忘記, 傳于安垺曰: ‘湖堂製述居首應教趙持謙, 豹皮一疋, 三中校理吳道一, 虎皮一令, 三下副校理朴泰輔, 鹿皮一令賜給.’”



이외에도 숙종은 재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독서당 인원에게 제술 시험을 보일 것을 직접 지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課製를 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하교를 내리기도 하였다.

전교하기를, “湖堂에 뽑힌 인원을 내일 아침 모두 銀臺에 와서 모이게 하였다. 이에 생각하건대, 祖宗에서 문학하는 선비를 뽑아 특별히 긴 휴가를 내려 날마다 課製하게 하셨으니, 그 착실하게 권장하는 뜻이 어떠한가. 그러므로 작년에 호당에서 행해야 할 절목을 마련할 때 조종조의 고사를 대략 모방하여 뽑힌 인원이 읽은 책을 월말에 써서 보고하게 하고 때때로 특별히 불러 처음부터 끝까지 강론하게 하였다. 또한 5일에 한 번씩 제술을 부과하여 등급을 매기고 월말에 入啓하여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도록 하는 일을 명백히 규정으로 정하도록 啓下하였으나 한 번도 거행하지 않았고, 가을에 左相의 筭子에 따라 다시 申飭하였으나 또한 奉行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권장하는 성대한 뜻이 폐기되어 시행되지 않는 데로 귀결됨을 면치 못하였으니 일이 미안하기가 이렇게 심한 것이 없다. 지금 이후로는 한결같이 節目에 따라 착실하게 거행하는 일로 각별히 더 신칙하라.” 하였다.<sup>10)</sup>

이 하교가 의미 있는 이유는 독서당에서의 제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독서당에서 제술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술이 부과되는지는 확인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숙종의 위 하교를 통해 적어도 숙종대에는 5일에 한 차례씩 제술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定式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승정원일기』 『숙종 16년(1690 경오) 12월 9일』. “湖堂被抄人員, 明朝竝來會銀臺. 而仍念祖宗朝抄選文學之士, 特賜長暇, 日日課製, 其着實勸獎之意, 爲如何哉? 故於昨年湖堂應行節目磨鍊之日, 略倣祖宗朝故事, 被抄人員所讀之書, 朔末書啓, 有時特召, 講論首尾. 且五日一課製等第, 朔末入啓, 分等施賞事, 明白定式啓下, 而一不舉行. 秋間因左相筭子, 更爲申飭, 而亦不奉行. 使朝家勸獎之盛意, 未免廢閣不行之歸, 事之未安, 莫此爲甚. 自今以後, 一依節目着實舉行事, 另加申飭.” 참고로 이 내용은 『숙종실록』에도 그대로 전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에는 독서당 과제의 문제도 제시되어 있어서 기존 과시 기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 아래는 宋 程頤가 “고요해진 뒤에 만물을 보면 자연히 모두 봄뜻이 있게 된다.[靜後見萬物, 自然皆有春意]”(『近思錄』 권4)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숙종이 직접 賦 제목을 제출하고 제술을 지시한 기사이다.

御題 賦 “靜後見萬物皆有春意”로 陸林一에게 전교하기를, “호당으로 하여금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다.<sup>11)</sup>

한편, 숙종은 직접 策問을 출제하여 독서당 신하들을 시험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실은 『숙종실록』 숙종 15년(1689) 12월 20일 기사에도 실려 있으나<sup>12)</sup> 구체적인 문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승정원일기』 해당 일자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숙종의 御題 책문의 전문이 실려 있어서 당시 숙종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으며, 독서당 신하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儉約을 숭상하고 재물 쓰임을 절약하며 세금 징수를 적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사치하고 방자하여 재물을 손상시키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이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혹 그치게 하지 못한다면 不敬하다 하지 않겠는가. 옛날 唐虞와 三代 때에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

11) 『승정원일기』 『숙종 17년(1691 辛未) 4월 21일』, “以御題賦靜後見萬物皆有春意, 傳于陸林一曰: ‘使湖堂製進.’” 참고로 希菴 蔡彭胤(1669~1731)의 『希菴集』 권1에는 당시에 제출했던 부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 아래 소주로 “辛未四月廿一日, 湖堂應製, 賜虎皮, 說書時.”라고 하여 창작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다. 채평윤, 『희암집』 권1, 『御題靜後見萬物皆春意賦』, 『한국문집총간』 182, 10쪽 참조.

12) 『숙종실록』 『숙종 15년(1689 己巳) 12월 20일』, “上命會讀書堂諸臣于政院, 親策以崇儉約, 節財用, 薄稅斂之道, 命提學柳命天考之, 賞賜有差.”

지 않음이 없었으니, 몸소 태평함을 이룩하여 이를 실현하는 방도를 들을 수 있겠는가? 후세의 임금으로 이 세 가지를 행하여 평온하게 다스렸던 사람과, 반대로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또한 차례로 꼽아볼 수 있겠는가?

나는 덕이 모자람에도 남기신 실마리를 이어받아 지키면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감히 흑시라도 소홀히하지 않고, 반드시 사치스러운 풍속을 혁파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며 백성들의 힘을 넉넉하게 하는 일을 스스로 마음속에 기약하여 하늘을 받들고 백성을 구휼하는 근본으로 여겼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치의 해악이 天災地變보다 심하고, 풍속은 날로 야박해져 사치스러운 씹씹이가 진흙과 모래보다도 심해지고, 복과 바디는 날로 비어 徭役의 과중함이 가혹한 수탈보다 심하며, 백성의 곤궁함은 날로 심해져 나라의 형세가 점점 위급하고 혼란한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단지 절실히 근심할 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내가 비록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자 하더라도 그 요점을 얻지 못한 것인가. 어찌서 기약한 바가 어그러져 부합하지 않음이 이에 이르렀는가. 만약 몸소 돈후하고 질박함을 실천하여 제도으로써 절제하며 재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융성하게 다스리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여 물산은 풍부해지고 백성은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 대부들은 휘장에 가까이 있으면서 고금의 일에 널리 통달하였으니 반드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있을 것이니, 각기 답안에 다 드러내고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라. 내 마땅히 직접 살펴볼 것이다.<sup>13)</sup>

위 인용문은 策問으로서는 비교적 짧은 것이지만 당시 숙종의 관심사

13) 『승정원일기』 「숙종 15년(1689 기사) 12월 20일」. “王若曰: 爲國之道, 唯在於崇儉約, 節財用, 薄稅斂而已, 侈肆傷財害民, 有一於斯, 未或不已, 可不敬歟? 古昔唐虞三代之際, 罔不行茲三者, 而身致太平, 其致此之道, 可得聞歟? 後世人辟, 能行茲三者而治安者, 其反是而亂亡者, 亦可得以歷指歟? 惟子涼德, 嗣守遺緒, 夙夜祗懼, 罔敢或忽, 必以革侈風·省冗費·寬民力, 自期于心, 以爲奉天恤民之本, 而奈之何奢侈之害, 甚於天災, 而風俗日儉, 靡費之用, 甚於泥沙, 而杼柚日空, 徭役之重, 甚於椎剝, 而民困日棘, 國勢駸駸然自趨於危亂之域? 只切疚心, 無以爲計, 是予縱欲行茲三者而未得其要歟, 一何與所期刺謬而不相副至此歟? 如欲躬行敦朴,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 以致治隆俗美, 物阜民安, 其道何由? 子大夫, 密邇帷幄, 博古通今, 必有所揣定於中者, 其各悉著于篇, 毋有所隱, 予當親覽焉.”

와 근심거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반부 이후의 통렬한 자기 반성은 그가 얼마나 올바른 통치를 위해 고심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군주가 이렇게까지 속내를 직접 노출하는 책문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신하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즉석으로 應製를 명하는 사례도 『승정원일기』에서 발견된다. 이는 기존의 과시 연구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문신 응제 역시 과거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영조 2년(1726 丙午) 11월 1일의 夜對에서 영조는 즉흥적으로 신하들에게 詩題를 내고 신하들이 시를 짓도록 명령한 바 있다.

상이 말하기를, “先祖 때부터 문신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月課 외에 또한 간간히 製述을 명하는 일이 있었다. 내가 삼년상을 마친 후 첫 夜對여서 4수의 시제를 내릴 것이니 하는 바에 따라 지어 바치라.” 하였다. 參贊官 趙榮福이 제목을 받아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펼쳐 보이니, 五言律詩 제목이 돌이고 七言律詩 제목이 돌이었다. 상이 말하기를, “대제학 또한 지어 바치라.” 하니, 李宜顯이 말하기를, “小臣은 평소 율시를 공부하지 않아 감히 지어 바치지 못하니 매우 황공합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너무 겸손해 하지 말고 지어 바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의현이 말하기를, “소신이 지어 바칠 수 있다면 聖敎가 내려졌는데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평소 율격을 알지 못하므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는 것이니 더욱 황송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어찌 반드시 억지로 지어 바치게 하겠는가.” 하였다. 입시한 여러 신하들이 모두 지어 바치자 상이 다 보고서 대제학에게 科次하도록 명하니, 의현이 과차하여 바쳤다. 상이 받아 책상 앞에 두고 내시에게 명하여 宣醞하도록 하였다.<sup>14)</sup>

14)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丙午) 11월 1일』. “上曰: ‘自先朝, 勸獎文臣之道, 月課之外, 亦有間間命製之事矣. 予於三年制畢後, 初爲夜對, 故茲下四首詩題, 隨其所作製進.’ 參贊官趙榮福受題, 披示入侍諸臣, 五言律詩題二, 七言律詩題二也. 上曰: ‘大提學亦爲製進.’ 宜顯曰: ‘小臣素無律詩工夫, 不敢製進, 極爲惶恐矣.’ 上

영조는 景宗의 삼년상을 마친 이후의 첫 야대를 기념하고자 모두 4개의 제목을 출제하여 신하들에게 읍시를 짓도록 명령하고, 이를 당시 대제학이었던 이의현에게 과차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이후로는 신하들에게 술을 하사하여 성대한 주연을 베풀었다. 제목이나 작품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누가 어떤 작품을 지었는지는 좀더 자료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정기적인 月課 이외에도 임금이 수시로 신하들에게 課製를 부과하여 문학적 역량을 시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단순한 여흥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영조가 대제학 이의현에게 명을 내려 제출된 작품들을 과차하도록 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과차 행위를 통해 자칫 여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야대에서의 作詩를 문신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행위로 전환하려 했던 영조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 (3) 科試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묘사

『승정원일기』가 임금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관인 승정원의 일지인 만큼, 임금이 친림한 시험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보다도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상세하다. 임금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한다는 면에서 『승정원일기』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 『일성록』과 비교해 보아도 그 기록의 詳略의 차이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분량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앞서 다룬 바 있는 고종 1년(1864 甲子) 8월 11일에 시행된 秋到記의 기록을 사례로 들어 본다.

『승정원일기』

辰時. 상이 春塘臺에 나아가 가을 到記儒生을 講書와 製述로 나누어 試

---

曰: ‘勿爲過嫌製進, 宜矣.’ 宜顯曰: ‘小臣若可製進, 則聖教之下, 何敢爲辭? 素未解律格, 故不敢承命, 尤極惶悚矣.’ 上曰: ‘若然則何必強令製進乎?’ 入侍諸臣, 皆製進. 上覽畢, 命大提學科次, 宜顯, 科次以進. 上受置榻上, 命內侍宣醞.”

取하였다. 이때 입시한 行 都承旨 李載元, 左承旨 閔奎鎬, 右承旨 李奎奭, 左副承旨 徐堂輔, 右副承旨 鄭基會, 同副承旨 李世器, 記事官 權膺善, 假注書 崔柄大, 別兼春秋 李冕光·洪遠植, 直閣 李世用, 檢校待教 趙寧夏·洪承億·李載冕, 副應教 趙秉世, 校理 張世容, 副校理 李應夏, 修撰 趙熙一, 副修撰 李根秀가 차례로 모시고 섰다.

때가 되자, 通禮가 外辦을 무릎 꿇고 청하니 상이 布裘翼善冠과 布袍, 布裘烏犀帶, 白皮靴를 갖추어 입고 輿를 타고서 宣化門을 나왔다. 藥房 提調 興寅君 李最應, 副提調 李載元이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아침 일찍 수고로이 거동하셨는데 聖上의 體候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결 같다.” 하였다. 이어서 協陽門을 나와 建陽門·銅龍門·靑陽門을 거쳐 春塘臺에 갔다. 通禮가 꿇어앉아 여에서 내리기를 청하니, 상이 여에서 내려 자리에 올랐다. 이재원이 표신을 내주어 布城을 열기를 청하니, 상이 이미 내려준 표신으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이재원이 아뢰기를, “待衛로 따라 올라간 사람 가운데 시관으로 낙점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려가서 예를 행하게 합니까?”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행 지중추부사 金炳國, 행 상호군 鄭基世, 형조 참판 兪致善, 대독관 이조 참의 徐承輔, 행 부호군 金永均, 홍문관 부수찬 李載冕, 부사과 洪承億, 고관 행 상호군 金學性, 행 상호군 金大根, 행 호군 趙秉恒, 참고관 행 부호군 金炳淵, 행 부호군 金尙鉉, 성균관 대사성 李鍾淳, 행 부호군 鄭泰好가 四拜禮를 행하고 나서 차례로 자리에 갔다. 이재원이 入門單子를 읽어 아뢰니, 상이 시관에게 명하여 賦의 제목을 “養則致其樂”로, 시한을 申時로 쓰게 하였다. 김병국이 꿇어앉아 써서 읽어 아뢰고 나서 홍승억이 받들고 나가 걸었다. 이세기가 講冊望單子를 바치니, 상이 『周易』을 낙점하고 이어서 講書를 작하라고 명하였다. 이세기가 아뢰기를, “강론할 장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추첨하라.” 하였다. 두 사람에게서 친히 받고 나서 상이 이르기를, “추첨을 그만두고 책에서 집어내어 하라.” 하였다. 이재원이 아뢰기를, “먼저 제출한 답안이 이미 들어왔으니 이미 내린 표신으로 문을 열고 시권을 바친 유생을 내보내게 합니까?” 하니, 상이 윤허하고, 먼저 제출한 답안을 본 뒤에 도로 내리고, 이어서 小次에 들어갔다. ……

상이 이르기를, “거둔 시권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재원이 收券單子를 읽어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 “考試하라.” 하고,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였는

데 이르기를, “시위하는 군병에게 각각 그 營門을 시켜 乾糲饋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소차에 들어가자 이재원이 司講을 통해 몇 사람을 뽑을 것인지를 들어가 여쭙게 하니, 상이 20인을 뽑으라고 명하였다. 이세기가 사알을 통해 들어가 여쭙기를, “講生은 7인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또 사알을 통해 들어가 여쭙기를, “비교할 책자는 어느 경서로 합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주역』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소차에서 나왔다. 상이 이르기를, “6차 比較 講生은 모두 대령하라.” 하였다. 상이 과차하라고 명하니, 김병국이 앞에 나아가 과차하였는데, 홍승억이 시권 제1장의 5구를 읽었을 때에 상이 이르기를, “그치라.” 하였다. 김병국이 아뢰기를, “등급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1장은 ‘正三下’로 쓰고 그 나머지는 모두 ‘次上’으로 쓰라.” 하였다. 김병국이 등급을 썼다. 이규석이 아뢰기를,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등을 겁니까?” 하니, 상이 윤택하였다. 선전관이 꿰어앉아 여쭙고 등을 거니, 각 영에서 차례로 등을 걸었다. 상이 이르기를, “대령한 유생을 앞으로 나오게 하라.” 하니, 幼學 鄭元時와 安秉鐸이 앞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성명과 거주지를 아뢰라.” 하니, 정원시·안병탁 등이 각각 성명과 거주지를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 “나이가 얼마인가?” 하니, 정원시는 “41세입니다.” 하고, 안병탁은 “27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병탁은 여러 차례 비교하여 비록 꺾이기는 했지만 그 공부가 독실한 것을 알 수 있으니, 특별히 급제를 내리라.” 하고,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자 정원시 등이 물러갔다. 또 고관에게 명하여 먼저 물러가게 하였다.

이재원이 아뢰기를, “封彌를 뜯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하라.” 하였다. 이재원이 봉미를 뜯고 나서 김병국이 아뢰기를, “預次는 ‘外’ 자를 씁니까?” 하니, 상이 윤택하였다. 이재원이 아뢰기를, “안병탁은 어느 등급으로 씁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通으로 하라.” 하였다. 상이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추도기 講에서 居首하여 通을 받은 유학 정시원과 之次로 통을 받은 유학 안병탁, 제술에서 賦로 居首하여 三下를 받은 진사 韓致益은 모두 直赴 殿試하고, 강의 之次로 통을 받은 유학 李錫弘 등 5인과 제술의 지차인 진사 李龍雨 등 2인은 모두 直赴會試하라. 강의 지차로 略을 받은 유학 柳廷植 등 5인과 제술의 지차로 次上을 받은 진사 金秉洙 등 3인은 모두 2분을

주고, 강의 지차로 약을 받은 유학 權適善 등 6인과 제술의 지차로 차상을 받은 생원 成大永 등 14인은 각기 『奎章全韻』 1권을 하사하라.” 하고, 이어 서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입격 유생은 내일 협양문 밖에서 상을 주라.” 하였다.

통례가 끊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뢰니, 상이 자리에서 내려왔다. 통례가 끊어앉아 여를 타기를 계청하니, 상이 여를 타고 청양문·興德門·明光門·集禮門·銅龍門·建陽門을 거쳐 협양문에 이르렀다. 병조 판서 申觀浩가 啓稟하여 儀仗을 해산하고, 이규석이 청하여 표신을 내어 계엄을 풀었다. 상이 宣化門을 거쳐 대내로 돌아가고,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sup>15)</sup>

- 15) 『승정원일기』 「고종 1년(1864 甲子) 8월 11일」, “甲子八月十一日辰時, 上詣春塘臺. 秋到記儒生, 分講製試取入待時, 行都承旨李載元, 左承旨閔奎鎬, 右承旨李奎爽, 左副承旨徐堂輔, 右副承旨鄭基會, 同副承旨李世器, 記事官權膺善, 假注書崔柄大, 別兼春秋李冕光·洪遠植, 直閣李世用, 檢校待教趙寧夏·洪承億·李載冕, 副應教趙秉世, 校理張世容, 副校理李應夏, 修撰趙熙一, 副修撰李根秀, 以次侍立. 時至, 通禮跪啓請外辦. 上具布裘翼善冠·布袍·布裘烏犀帶·白皮靴, 乘輿出宣化門. 藥房提調興寅君最應, 副提調李載元, 進前奏曰: ‘侵早勞動, 聖體, 若何?’ 上曰: ‘一樣矣.’ 仍出協陽門, 由建陽門·銅龍門·青陽門, 詣春塘臺. 通禮跪啓請降輿. 上降輿陞座. 載元請出標信開布城. 上命以已下標信舉行. 載元奏曰: ‘侍衛從陞中, 有試官蒙點人, 使之下去行禮乎?’ 上可之. 行知中樞府事金炳國, 行上護軍鄭基世, 刑曹參判俞致善, 對讀官吏曹參議徐承輔, 行副護軍金永均, 弘文館副修撰李載冕, 副司果洪承億, 考官行上護軍金學性, 行上護軍金大根, 行護軍趙秉恒, 參考官行副護軍金炳淵, 行副護軍金尙鉉, 成均館大司成李鍾淳, 行副護軍鄭泰好, 行四拜禮訖, 以次就位. 載元讀奏入門單子. 上命試官書題賦, 養則致其樂. 限申時, 炳國跪書讀奏訖. 承億捧出懸之. 世器進講冊望單子, 上落點于周易, 仍命開講. 世器曰: ‘講章何以爲之乎?’ 上曰: ‘抽籤.’ 親受二人訖. 上曰: ‘抽籤置之, 拈卷爲之.’ 載元奏曰: ‘先張已入, 以已下標信開門, 呈券儒生使之出透乎?’ 上可之, 先張進覽後還下. 仍入小次. …… 上曰: ‘收券幾何?’ 載元讀奏收券單子. 上曰: ‘考試.’ 命書傳教曰: ‘侍衛軍兵, 令各其營乾犒饋.’ 上入小次, 載元以司謁入稟: ‘取幾人乎?’ 上命取二十人. 世器以司謁入稟曰: ‘講生比較七人, 何以爲之?’ 上命仍爲之. 又以司謁入稟曰: ‘比較冊子, 以何經爲之乎?’ 上命仍以周易爲之. 上出次. 上曰: ‘六次比較講生, 竝爲待令.’ 上命科次. 炳國進前科次. 承億讀券第一張五句, 上曰: ‘止之.’ 炳國奏曰: ‘書等何以爲之乎?’ 上曰: ‘第一張書正三下, 其餘竝書次上. 炳國書等.’ 奎爽奏曰: ‘日勢已暮, 點燈乎?’ 上可之, 宣傳官跪啓稟懸燈. 各營以次懸燈. 上曰: ‘待令儒生, 使之進前.’ 幼學鄭元時·安秉鐸進前. 上曰: ‘姓名及居住奏之.’ 元時·秉鐸等, 各奏姓名及居住. 上曰: ‘年紀幾何?’ 元時曰: ‘四十一歲矣.’ 秉鐸曰: ‘二十七歲矣.’ 上曰: ‘安秉鐸, 屢次比較, 雖已見屈, 其工之篤實可知, 特爲賜第.’ 仍命退,



『일성록』

綱：춘당대에 납시어 秋到記를 행하였다. 讀奏官은 金炳國·鄭基世·李承輔·金永均·李載冕·洪承億이고, 考官은 金學性·金大根·趙秉恒·金炳淵·金尙鉉·李鍾淳이다.

目：布裘翼善冠과 布袍, 布裘烏犀帶, 白皮靴를 갖추고 輿에 올라 協陽門을 나서 춘당대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자리에 올랐다. 試官과 儒生들이 예를 행하고 나서, “養則致其樂”를 賦의 제목으로 삼았다. 문에 들어온 사람이 716명, 거두어들이 시권이 496장이었다. 이에 과차하였다. 하교하기를, “秋到記의 講에서 居首하여 通을 받은 幼學 鄭元時, 之次로 통을 받은 유학 安秉鐸, 제술에서 賦로 거수하여 三下를 받은 진사 韓致益은 모두 直赴殿試하라. 강에서 지차로 통을 받은 유학 李錫弘 등 5명, 제술에서 지차로 次上을 받은 진사 李龍雨 등 2명은 모두 直赴會試하라. 강에서 지차로 略을 받은 유학 柳廷根 등 5명, 제술에서 지차로 차상을 받은 진사 金秉洙 등 3명은 모두 2分을 주라. 강에서 지차로 약을 받은 유학 權迪善 등 6명, 제술에서 지차로 차상을 받은 생원 成大永 등 14명은 모두 『奎章全韻』 1건씩을 하사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입격 유생은 내일 협양문 밖에서 시상하라.” 하였다.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협양문으로 들어가 궁궐로 還御하였다.<sup>16)</sup>

元時等退出. 又命考官先退. 載元奏曰: ‘坼封何以爲之乎?’ 上曰: ‘承旨坼封, 可也.’ 載元坼封訖. 炳國曰: ‘預次書外字乎?’ 上可之, 載元曰: ‘安秉鐸, 以何等書之乎?’ 上曰: ‘通施行.’ 上命書傳教曰: ‘秋到記, 講居首通, 幼學鄭元時之次通, 幼學安秉鐸, 製述賦居首三下, 進士韓致益, 並直赴殿試, 講之次通, 幼學李錫弘等五人, 製述之次, 次上進士李龍雨等二人, 並直赴會試, 講之次略, 幼學柳廷植等五人, 製述之次, 次上進士金秉洙等三人, 並給二分, 講之次略, 幼學權迪善等六人, 製述之次, 次上生員成大永等十四人, 各奎章全韻一件賜給.’ 仍命書傳教曰: ‘入格儒生, 明日協陽門外施賞.’ 通禮跪啓禮畢. 上降座. 通禮跪啓請乘輿. 上乘輿, 由青陽門·興德門·明光門·集禮門·銅龍門·建陽門, 抵協陽門. 兵曹判書申觀浩啓稟放仗. 奎爽請出標信解嚴. 由宣化門還內. 諸臣以次退出.”

16) 『일성록』 「고종 1년(1864 甲子) 8월 11일」, “御春塘臺行秋到記, 讀奏官金炳國·鄭基世·李承輔·金永均·李載冕·洪承億, 考官金學性·金大根·趙秉恒·金炳淵·金尙鉉·李鍾淳. 具布裘翼善冠·布袍·布裘烏犀帶·白皮靴, 乘輿出協陽門, 詣春塘臺, 降輿, 陸座. 試官及儒生行禮訖, 以養則致其樂爲賦題. 入門七百十六人, 收券四百九十六張, 仍行科次. 教曰: ‘秋到記講, 居首通幼學鄭元時, 之次通幼學安秉鐸, 製述

같은 시험에 대한 기록임에도 인용문의 분량에서도 이미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거니와, 『승정원일기』는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참석 관원들의 명단도 각각의 본래 직책과 성명을 빠짐 없이 표시한 『승정원일기』와는 달리, 『일성록』은 試官으로서의 직책만 간단히 정리하였을 뿐이다. 또한 『일성록』은 임금의 복장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서술 후 곧바로 시험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반면, 『승정원일기』에서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안부를 묻는 대화 장면부터 시작하여 이동 중 신하들과의 대화, 문제를 출제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고종과 신하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까지도 자세히 묘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정원일기』 기록을 통해서만 친림 과시의 세부적인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시 진행 중에 임금과 신하들 간에 오간 대화들을 통해 과거에 대한 전근대 국왕 및 신하들의 개인적 견해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科次 장면에서도 詳略의 차이는 뚜렷한데, 『일성록』이 과차의 결과에 대한 하교만 간략히 실어 놓은 반면 『승정원일기』는 과차의 진행 순서대로 그 절차와 실제 대화를 모두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차할 때의 성적 등급 부여는 임금이 임의대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考官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考試가 이루어져 대략적인 순위는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성적 부여는 임금의 명에 따라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일성록』의 경우는 과시 관련 기록에 대한 범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sup>17)</sup> 기록이 좀더 체계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응시 인원

賦居首三下進士韓致益, 竝直赴殿試. 講之次通幼學李錫弘等五人, 製述之次次上進士李龍雨等二人, 竝直赴會試. 講之次略幼學柳廷根等五人, 製述之次次上進士金秉洙等三人, 竝給二分. 講之次略幼學權過善等六人, 製述之次次上生員成大永等十四人, 竝奎章全韻一件賜給.’ ○又教曰: ‘入格儒生, 明日協陽門外施賞.’ 降座, 乘輿, 入協陽門, 還內.”

대한 정확한 수치가 매년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승정원일기』 기록과 비교해 우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일성록』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의 상세함을 제거하고 건조한 사실 관계 기록으로만 내용을 축소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된 『일성록』의 기록을 더욱 축소해 기록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다. 실록의 기사는 시험 시행 사실을 비롯하여 거수를 차지한 인원들의 명단 및 직부전시 혜택 부여의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sup>19)</sup>

결국 우리가 조선시대 과시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하고, 과거의 문화사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승정원일기』 소재 과시 자료를 참조해야만 할 것이다.

### 3. 『承政院日記』 소재 科試 자료의 가공 및 활용 방안

이상의 논의 결과에 바탕하여, 과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승정원일기』를 활용하기 위해 자료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sup>20)</sup>

17) 규장각 소장 필사본 『日省錄凡例』에는 ‘科試類’ 조목이 별도로 편차되어 있어서 과시 관련 기록 방법이 12가지 조목에 걸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柳本藝, 『일성록법례』, 규장각 소장본(奎6321), 참조.

18) 『승정원일기』의 경우 응시 인원이 試取 시행 기사에서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일성록』이 『승정원일기』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19) 해당 시험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高宗實錄』, 『고종 1년(1864 甲子) 8월 11일』, “詣春塘臺, 行秋到記. 講, 幼學鄭元時·安秉鐸, 製述賦, 進士韓致益, 竝直赴殿試.”

20) 여기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 등은 다소 불완전하나, 향후 실제 가공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류 기준이 보다 완정하게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에서는 단지 하나의 假案을 제시함으로써 그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데 의미를 두었다.

### (1) 자료의 추출과 集積

『승정원일기』 소재 과시 자료를 활용하려면 우선적으로 『승정원일기』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과시 관련 자료들을 추출하여 集積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원문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온라인 DB로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특정 검색어 등을 활용해 이 작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승정원일기』의 친림시 자료에는 “(시험종류)試取入侍時”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므로 ‘試取’ 또는 ‘試取入侍’로 검색하면 친림시 자료를 보다 손쉽게 검색하여 집적할 수 있다. 또한 科次 자료의 집적을 위해서는 ‘科次’ 혹은 ‘科次入侍’, ‘居首’, ‘之次’ 등의 검색어로 검색해 보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가며 자료를 추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검색어를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자료 추출과 집적 과정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2) 자료의 분류 및 색인어 추출

집적된 자료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색인어를 추출하여 자료 활용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시험 종류, 시행 일시 등 시험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거나, 해당 기사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적이다. 전자의 경우는 과시의 통계적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는 과시의 내용 연구를 좀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분류 기준의 한 예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험 일시 및 유형 : 시험 시행 연, 월, 일, 시험 종류(小科(生員試, 進士試), 大科, 儒生 製述, 文信 製述, 廣製 등), 시험 단계(初試, 覆試 및 初場, 中場, 終場 등), 試官.

주제 : 제목(시험 문제 관련 내용), 시행(시험 시행 사실에 관한 내용), 시관(시관에 대한 논의, 처벌 등), 제도(시험 제도에 대한 논의 등), 폐단(시험 폐단에 대한 내용), 거자(응시생에 대한 논의, 난동, 처벌 등), 결과(과차 등 시험 결과에 대한 내용) 등.

또한 각 기사별로 인명, 서명, 용어 등에 대한 색인어 추출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색인어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를 한데 모아보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된다. 색인어 추출 작업은 자료에 대한 독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향후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 (3) 상호 참조를 통한 자료 보완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가공된 자료는 『승정원일기』 이외의 역사 자료 및 개인 문집 등 다른 유형의 자료와 상호 참조를 통해 자료를 보완 및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승정원일기』 기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완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앞서 살펴보았던 숙종 8년 6월의 湖堂 應製의 경우를 들어 본다.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상을 받았던 趙持謙, 吳道一, 朴泰輔 세 사람이 제출했던 답안 원문은 각 인물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에는 답안 자료와 더불어 해당 시험의 관련 사실들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대폭 보완해주고 있다. 이중 居首를 차지한 조지겸의 답안은 그의 『우재집』 권2에 『風雪訪草廬』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어 해당 응제의 제목을 알려주는 한편으로, 제목 아래 小註

에는 관련 사항이 아래와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새로 湖堂에 뽑히게 되어 승정원에서 대기하였다. 당시에 陞秩의 명이 있었는데, 故事에 通政의 품계에 오르게 되면 독서당에서 나와야 했는데 승정원에서 啓稟하여 특명으로 머무르게 되어 이에 응제하였다. 대제학 李敏敍가 考試하여 三上으로 수석을 차지하고 豹皮를 하사받았다. 다음날 賓廳에 불러들어가 술을 하사받았다.<sup>21)</sup>

한편 박태보의 문집인 『定齋集』에는 그가 제출했던 답안이 수록되어 있는 이외에도, 『坎流編』에 해당 응제 때의 전후 사정이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충해주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독서당 신하들의 정황도 언급되어 있어서 시험 시행 당시의 관련 정황 등을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sup>22)</sup>

이처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중심에 두고서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풍성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 소재 자료의 집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관련 기록들을 최대한 탐색하여 상호 참조하고, 이를 통해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완한다면 『승정원일기』 소재 과시 자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4. 맺음말

이 논문에서 필자는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다양한 과시 관련 자료들

21) 조지경, 『迂齋集』 권2, 『風雪訪草廬』, 『한국문집총간』 147, 426쪽. “新選湖堂, 命來待政院. 時有陞秩之命, 故事陞通政則解書堂, 政院啓稟, 特命留待, 於是應製. 大提學李敏敍考, 三上魁, 賜豹皮. 明日, 招詣賓廳宣醞.”

22) 박태보, 『정재집』 별집 권5, 『감류편』 下, 『한국문집총간』 168, 287쪽. “徐宗泰不製. 林泳, 李畬在外.”

의 사례를 제시하여 그 자료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 가공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향후 과시 연구에서 『승정원일기』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 등으로 인해 인조대 이후의 자료만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기존에 주로 활용되던 방목이나 과문집, 개인 문집 등의 과시 관련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자료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시 연구에서 지니는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시 연구에서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하여 『승정원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진전된 연구 성과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승정원일기』 외에도 편년체 역사서에서 과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를테면 抄啓文臣의 課製에 대해서는 규장각의 일지인 『內閣日曆』이 그 어떤 자료보다도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고, 『日省錄』에는 영조-순조 연간의 다양한 과시 관련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일성록』은 『승정원일기』에는 빠져 있는 정규 과시 관련 기록들이 상세하여 『승정원일기』와 서로 기록을 보완해줄 수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sup>23)</sup>

거듭 강조하지만, 학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향후 원활한 과시 연구를 위해서는 『승정원일기』를 필두로 다양한 편년체 역사 기록 소재 과시 자료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자료의 집적 및 분류 작업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國朝文科榜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

23) 『일성록』의 과거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박현순(2017) 참조.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일성록』의 과거 관련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비해 훨씬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논문의 논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는 대소과 정규 과시에 한정된다고 생각된다.

- 『內閣日曆』. [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NGK](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NGK)(텍스트 및 이미지)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텍스트)  
[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SJW#none](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SJW#none)(이미지).
- 『日省錄凡例』. [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grpId=&itemId=IT&gubun=book&depth=1&cate1=&cate2=&dataGubun=%EC%84%9C%EC%A7%80&dataId=ITKC\\_IT\\_01](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grpId=&itemId=IT&gubun=book&depth=1&cate1=&cate2=&dataGubun=%EC%84%9C%EC%A7%80&dataId=ITKC_IT_01)(번역 및 텍스트),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06321\\_00](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06321_00)(이미지).
- 『日省錄』. <http://db.itkc.or.kr/dir/item?itemId=IT#/dir/list?itemId=IT&gubun=book>(번역), [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ILS](http://kyudb.snu.ac.kr/series/main.do?item_cd=ILS)(텍스트 및 이미지).
-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 朴泰輔, 『定齋集』, 『韓國文集叢刊』 168.
- 趙持謙, 『迂齋集』, 『韓國文集叢刊』 147.
- 蔡彭胤, 『希菴集』, 『韓國文集叢刊』 182.

- 김상기, 「讀書堂(湖堂)考」, 『진단학보』 17, 진단학회, 1955.
- 박현순, 「정조~고종대 『日省錄』 科擧 시행 기사의 작성 방식 검토」, 『규장각』 5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
- \_\_\_\_\_,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 80, 동양고전학회, 2020.

투고일 2020. 10. 31 심사시작일 2020. 11. 18 게재확정일 2020. 12. 22



*Abstract*

The Use of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in the Study of Gwageo(科擧) in the Late Joseon Period

Kim, Kwang-nyeon

In order to expand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gwageo data, this paper reviewed the gwageo-related materials contained in *Seungjeongwon ilgi*, which so far is thought to have not been sufficiently noticed as a gwageo material.

*Seungjeongwon ilgi* has a variety of records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in existing gwageo-related records. In the case of yusaengeungje(儒生應製), the list of successful candidates and awards were recorded with little omission, and in the case of gwaje(課製), the background and related details were recorded. In the case of the King Sookjong(肅宗),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records related to the Dokseodang are detailed. In the case of Chillimsi(親臨試), the test procedure is described in great detail, focusing on the king's record.

In order to utilize the gwageo data on *Seungjeongwon ilgi*, the gwageo-related content must first be reviewed and the data aggregated. It shall be subjected to proper processing, such as extraction of indexers. Finally, cross-references with other gwageo-related materials will complement the deficiencies of the data, making the gwageo data recorded in the *Seungjeongwon ilgi* more efficient use of the gwageo research.

In order to vitalize future gwageo research, detailed investigation of various gwageo data, including *Seungjeongwon ilgi*, and aggregation and classification of data should be carried out as soon as possible.

**Keywords**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Gwageo(科擧), Late Joseon Period, Yusaengeungje(儒生應製, A writing test imposed on the Confucian scholars by the king's order), Gwaje(課製, A regular writing tests imposed on subjects), Chillimsi(親臨試, A King-sponsored writing test).

